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23호서식]

임시조치통보서

대상자	성명	()		
	주민등록번호	(세)		
	직업	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
	주거			
피해아동등	성명			
	생년월일			
	주거			
조치내용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(1호)		
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2호) 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 []그 밖의 장소()		
	[□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3호)		
	[□]	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(4호)		
	[□]	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(5호)		
	[□]	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(6호)		
	[□]	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(7호)		
통보일시 및 장소	일시			
	장소			
통보방법	[□]	대면통보		
	[□]	전화통보(전화번호 :)		

년 월 일

사법경찰관(리)

별첨첨부

[인적사항]